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79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김영철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원중,  
김재진,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상욱,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3  
명)

## 1. 제안이유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중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축 목적에 맞는 적정 연장 횟수를 두어 존치기간을 연장토록 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합리적인 건축물 관리를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익성 달성시까지 존치기간 연장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함 (안 제19조의7 제②항제1호)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 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용도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분양시점에 입주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설치되어 지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1회 연장(기간 연장시 최장 6년)을 하고자 함(안 제19조의7 제②항제2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의7(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생략)</p> <p><u>&lt;신 설&gt;</u></p>	<p>제19조의7(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u></li> <li>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u>건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u></li> </ol>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중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등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익목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손감소나 재정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